

우송대학교 직제규정

제 정	2009. 01. 생략
개 정	2021. 6.
개 정	2021. 8.
개 정	2021. 9.
개 정	2021. 1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기본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교의 직제는 법령, 학교법인우송학원정관 및 학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분장 및 업무의 위임)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과 업무의 위임 범위는 따로 정한다.

제 2 장 편 제

제4조(기구) ①본교에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본교에는 총장과 부총장, 행정부총장, 산학협력부총장, 학사부총장(교학), 교육특임부총장, 특임부총장, 학장, 대학원장, 국제교류부총장보, 기획처(실)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복지처장, 국제교류원(처)장, 대외협력원(처)장, 전략기획처장, 총무처장, 시설처장, 산학협력단장, 인사관리과장, 교육특화본부장, 학생생활종합지원본부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학생경력개발센터장, 지역협력연구센터장, 복학지원센터장, 온라인수업인증및질관리센터장, 인권센터장, 창업지원단장을 두며,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에는 부처장을 둔다.(개정2010.3.1.) (개정2012.3.1.) (개정2012.12.31.) (개정2014.1.1.) (개정2014.10.8.) (개정2015.8.1.) (개정2016.2.1.) (개정2016.07.01.) (개정2016.08.29.) (개정2016.12.02.) (개정2017.08.11.) (개정2018.01.01.) (개정2018.02.08.) (개정2018.05.01.) (개정2018.10.08.) (개정2019.11.26.) (개정2020.01.01.) (개정2020.02.17.) (개정2020.03.31.) (개정2020.08.25.) (개정2020.11.19.) (개정2020.12.22.) (개정2021.08.20.) (개정2021.09.01.) (개정2021.11.05.)
2. 본교에는 철도물류대학,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보건복지대학, 호텔외식조리대학,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엔디컷 국제대학, Sol International School, 우송교양대학을 둔다.(개정2012.3.1.) (개정2017.02.28.) (개정2020.03.31.)
3. 본교에는 대학원과 철도융합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글로벌외식조리대학원, Culture-Technology융합대학원 등의 특수대학원을 둔다.(개정2012.3.1.) (개정2015.3.1.) (개정2016.7.1.) (개정2017.2.28.) (개정2019.11.26.)
4. 대학본부에는 기획처(실), 교무처, 입학처, 학생복지처, 국제교류원(처), 대외협력원(처), 전략기획처, 총무처, 시설처, 인사관리과, 교육특화본부, 학생생활종합지원본부,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생경력개발센터, 지역협력연구센터, 복학지원센터, 온라인수업인증및질관리센터, 인권센터, 창업지원단 등의 행정기관을 두며, 각 처와 단에는 필요한 경우 처장과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과 부단장을 각각

둘 수 있다.(개정2012.12.31.)(개정2014.1.1.)(개정2014.10.08.)(개정2016.7.1.)(개정2016.12.02.)(개정2017.08.11.)(개정2018.01.01.)(개정2018.02.08.)(개정2018.10.08.)(개정2019.11.26.)(개정2020.02.17.)(개정2020.08.25.)(개정2021.08.20.)(개정2021.09.01.)(개정2021.11.05.)

5. 가.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에는 행정부총장보를 두며 총장을 보좌한다.(개정2012.12.31.)

나.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행정을 총괄 및 운영할 행정과(팀)을 둔다.(개정2018.04.03.)

6. 본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둔다.(개정2021.08.20.)

②총장은 교육·연구진흥과 학교발전에 필요한 특수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구 외에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특별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③교무위원회는 총장과 행정부총장, 학사부총장(교학) 및 각 처의 장(시설처장, 관리처장을 제외한다)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개정2012.12.31.)(개정2014.10.8.)(개정2015.8.1.)(개정2016.2.1.)(개정2016.7.1.)(개정2016.08.31.)(개정2016.12.02.)(개정2018.05.01.)(개정2018.05.29.)(개정2018.10.08.)(개정 2020.11.19)(개정2021.08.20.)

제5조(총장) 총장은 본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총괄한다. 다만, 외국인이 총장으로 임용된 경우에 그 직무의 범위는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의한다.

제6조(행정부총장) 행정부총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1. 입학처, 학생복지처, 대외협력원(처), 전략기획처, 총무처, 시설처, 산학협력단, 인사관리과, 학생경력개발센터, 지역협력연구센터, 인권센터, 창업지원단 소관 업무
2. 도서관, 부설 연구소, 학생군사교육단 소관업무
3. 국고사업 지원

(개정2012.12.31.)(개정2014.10.8.)(개정2015.8.1.)(개정2016.2.1.)(개정2016.7.1.)(개정2016.08.31.)

(개정2016.12.02.)(개정2017.07.05.)(개정2018.05.01.)(개정2020.01.01.)(개정2020.12.22.)(개정2021.08.20.)(개정2021.11.05.)

제6조의2(학사부총장(교학)) 학사부총장(교학)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신설2021.08.20.)

1. 각 대학 및 대학원 소관 업무
2. 교무처, 국제교류원(처),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복학지원센터, 온라인수업인증및질관리센터, 교육실습지원센터, 사회봉사단 소관 업무
3. 우송정보센터, 평생교육원, 외국어교육원, 한국어교육원 소관 업무
4. 교원업적평가 관련 업무

제7조(산학협력부총장) 산학협력부총장은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개정2012.12.31.)(개정2014.10.8.)(개정2015.8.1.)(개정2016.2.1.)

제8조(교육특임부총장) 교육특임부총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개정2020.11.19)

1.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2. 고등교육평가원 운영에 관한 업무
3. 온라인수업인증및질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개정2016.08.31.)(개정2016.12.02.)(개정2017.07.05.)(개정2017.08.11.)(개정2018.01.01.)(개정2018.05.01.)(개정2020.01.01.)(개정2020.12.22)(개정2021.08.20.)

제8조의2(특임부총장) 특임부총장은 학생생활종합지원본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개정2020.12.22)(개정2021.08.20.)

제9조(우송교양대학장) ①우송교양대학장은 본교의 교양교육과정 운영 및 비교과 운영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개정2015.8.1.)(개정2016.2.1.)(개정2016.08.31.)(개정2018.05.01.)(개정2020.03.31.)(개정2020.12.22.)

②우송교양대학 행정을 총괄 및 운영할 행정과(팀)을 둔다. (개정2018.04.03.)(개정2020.03.31.)

③우송교양대학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학장을 둘 수 있다.(신설2020.02.17.)(개정2020.03.31.)

제10조(대학원장) ①대학원장은 본교의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교무 및 대학원생 지도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개정2015.8.1.)(개정2016.2.1.)(개정2018.05.01.)

②대학원장은 겸직할 수 있다.

③대학원장은 각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과 개편 및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그리고 명예박사학위의 수여·취소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1조(학장) ①각 대학에는 학장을 둘 수 있다.(개정2021.08.20.)

②학장은 소관 대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소관 대학의 학사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개정2018.05.01.)(개정2020.12.22)

1. 대학 및 학과의 발전계획 수립과 그 실행에 관한 업무
2. 대학, 학과 및 교원의 목표설정과 목표관리에 관한 업무
3. 학과의 교육과정 개설과 폐지 및 그 운영에 관한 업무
4. 교원에 대한 복무관리에 관한 업무(단, 국외출장 명령은 제외한다)
5. 학과의 수업관리에 관한 업무
6. 소속 교원(초빙 및 겸임 등 비 전임교원을 포함한다)의 평가에 관한 업무
7. 대학의 입시 및 취업에 관한 업무
8. 학생의 장학, 학생 지도 등에 관한 업무
9. 총장이 부여하는 업무
10. 기타 대학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

③학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학장을 둘 수 있다.(신설2020.02.17.)

제12조(기획처(실)) ①기획처(실)는 대학 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대학 평가업무와 대학 특성화에 관한 업무, 학과의 설립과 폐지(대학원을 포함한다), 대학 정보공시제도 총괄 관리,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총괄 관리, 대학 홍보의 기획 및 조정, 발전기금 조성, 교원업적평가제도의 관리 및 운영, 대학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각종 사업의 대학예산 총괄 관리, 대학의 통합 운영 관리를 위해 고등교육평가원과 연계한 환류 체계 관리, 디지털 캠퍼스 실현을 위한 사업 총괄 관리 등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개정 2018.10.01.)(개정2020.08.25.)(개정2021.08.20.)(개정2021.09.01.)

②기획처(실)에는 기획팀, 발전협력팀, 대학혁신실을 둔다.(개정 2018.10.01.)(개정2020.08.25.)(개정2021.08.20.)(개정2021.09.01.)

제13조(교무처) ①교무처는 학사과정 및 석·박사과정 전반의 교무 및 학적에 관한 업무(외국인 학생의 교무·학적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교직·전공교육과정 조정 및 운영, 교직·전공 교육과정의 개편과 운영, 교직과정에 관한 업무, 교육 및 연구 공간 조정업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교무처에 교무팀, 학적팀(학생종합서비스센터), 교직과, 대학원팀을 둔다.

③교무처에 교무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학원 부장을 둘 수 있다.

④교무처에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혁신실장을 둘 수 있다.(신설2021.04.22.)

제13조의2(교육특화본부) ①교육특화본부는 교수학습에 관한 업무,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업무, 비교과교육 관리업무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신설2018.02.08.)

②교육특화본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신설2018.02.08.)

- 제14조(입학처)** ①입학처는 학사·석사·박사과정 전반의 학생(외국인 학생을 포함한다) 선발 기본계획의 수립·운용, 입학시험 관리 및 입시결과 평가·분석업무를 관장한다.(개정2016.07.01.)
 ②입학처에 입학업무를 전담하는 입학부처장과 입학실장을 둘 수 있다.(2014.10.8.)(개정2016.7.1.)
 ③입학처에 편입생 모집에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입지원단을 둘 수 있다.(개정2018.03.07.)
 ④입학처에는 입학기획팀, 입학관리팀, 입학사정관실을 둔다. (개정2016.7.1.)(개정2018.04.03.)
- 제14조의2(학생경력개발센터)** 학생경력개발센터는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취업률 제고 및 관리, 학생경력개발 및 운영 등 취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신설2016.7.1.)
 ②학생경력개발센터에 취업지원실을 둔다.(신설2017.04.10)
- 제15조(학생복지처)** ①학생복지처는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외국인 학생을 포함한다.)에 대한 학생지도에 관한 업무, 장학 및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 동아리 활동 지원업무, 소수집단학생(장애학생, 다문화가정학생, 북한이탈주민(새터민) 학생) 지원업무 등을 관장한다. (개정2017.01.01.) (개정2018.01.01.)(개정2019.11.26.)
 ②학생복지처에 학생과를 두고, 학생과에는 학생팀과 장학팀을 둔다. (개정2015.3.1.)(개정2018.04.03.)(개정2018.12.18.)(개정2019.11.26.)
- 제15조의2(학생생활종합지원본부)** ①학생생활종합지원본부는 학생상담센터, 학생경력개발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봉사단, 복학지원센터, 창업지원단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신설2019.11.26.)(개정2020.12.22)
 ②학생생활종합지원본부의 조직은 별도로 정한다.(개정2019.11.26.)
- 제16조(국제교류원(처))** ①국제교류원(처)은 대외협력, 외국대학과의 교류 및 협력, 국제교류, 외국인 교원의 채용 및 업적평가에 관한 제반 업무, 외국학생의 모집 및 외국인 교원과 학생출·입국, 외국인 교원과 학생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개정2014.1.1.)
 ②국제교류원(처)에는 국제교류팀(글로벌센터), 유학생서비스팀을 둔다.(2014.1.1.)(개정2015.3.1.)
 ③국제교류원(처)에 중국실장, 일본실장, 미주실장, 해외홍보실장, 외국학생 전문지원실장을 둘 수 있다.(개정2014.1.1.)(2021.06.09.)
- 제16조의2(대외협력원(처))** ①대외협력원(처)은 대학 홍보의 기획 및 조정업무, 언론보도 관리업무, 대학 정기간행물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한다. (신설2014.1.1.) (2014.10.8.)
 ②대외협력원(처)에는 대외협력팀을 둔다. (신설2014.1.1.)
- 제17조(총무처)** ①총무처는 교직원 보수와 이와 관련된 업무, 자금관리 및 예·결산에 관한 업무, 예산집행에 관한 업무, 서무업무, 물품구매, 검수 및 관리업무,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수리 및 관리업무와 다른 처에 속하지 않는 업무 등을 관장한다.(개정2017.01.01.)(개정2018.01.01.)
 ②총무처에는 총무팀, 구매팀을 둔다.(개정2017.01.01.)(개정2018.01.01.)
- 제17조의2(시설처)** ①시설처는 일반시설관리와 공사관리 업무 및 대학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한다(신설2010.3.1.) (개정 2018.02.08.)
 ②시설처에는 시설팀, 재난안전실을 둔다.(개정 2018.02.08)
- 제17조의3(인사관리과)** ①인사관리과는 직원(조교를 포함한다)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및 용역관리 도급업무, 시설물·차량유지관리, 영선관리, 기숙사 관리 업무 등을 관장한다.(신설2014.1.1.)
 ②인사관리과에는 인사팀, 관리팀, 교육문화환경팀을 둔다.(개정2015.3.1.)
- 제18조(산학협력단)** ①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 진흥 및 관·산·학 협력을 촉진하고 본교의 학술진흥과 연구의 지원 및 관·산·학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산학협력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개정2020.03.03.)(개정2021.01.22.)

제18조의2(창업지원단) ①창업지원단은 본교의 창업교육지원, 창업아이템사업화 지원, 산학 연계 창업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창업컨설팅 및 글로벌 창업프로그램 운영 등 창업지원 및 연구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신설2017.08.11.)(개정2017.10.25)

②창업지원단에는 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창업융복합센터, 글로벌창업컨설팅센터, 글로벌창업센터(Global Entrepreneurship Center), 창업행정지원실을 두며, 각 센터(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2017.10.25)

1. 창업교육센터: 창업사업화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전형 창업교육지원 업무 등
2. 창업보육센터: 창업아이템사업화 지원, 창업인큐베이터 관리·운영 업무 등
3. 창업융복합센터: 산학 연계 창업 프로그램 운영, 인문학과 과학기술 연계 창업 프로그램 운영 업무 등
4. 글로벌창업컨설팅센터: 글로벌 창업 컨설팅 및 멘토링 운영, 단과대학간 연계 창업교육 협력 지원 업무 등
5. 글로벌창업센터(Global Entrepreneurship Center): 글로벌창업교육, 글로벌창업 프로그램 운영 업무 등
6. 창업행정지원실: 창업지원단 창업행정 및 창업재정 지원업무 등

③각 센터(실)에는 센터(실)장을 둘 수 있으며, 센터(실)장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사로 보하며 총장이 임명한다.(개정2017.10.25)

④창업지원단에 창업지원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창업전략기획실장을 둘 수 있다.

제19조(전략기획처) ①전략기획처는 행정조직의 설립과 폐지, 예산편성에 관한 업무, 제 규정 관리에 관한 업무, 교원 신규채용·재임용·승진·면직 등 교원인사(비전임교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개정2020.08.25.)

②전략기획처에는 재정·인사과를 둔다.

제20조(교수학습개발센터) ①교수학습개발센터는 대학생들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교 교원(비전임교원을 포함한다)들의 교수역량의 강화를 위한 교수법과 학습자료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개정2016.12.02.)

②교수학습개발센터의 조직은 별도로 정한다.(개정2016.12.02.)

제20조의2(지역협력연구센터) 지역협력연구센터는 지역의 산업체·연구기관·공공기관·특수목적기관·인근대학 등과의 교육·연구·봉사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지역협력연구센터의 조직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의3(복학지원센터) ①복학지원센터는 각 대학과 연계하여 휴학생의 복학을 지원하기 위한 복학안내 지원, 홍보 지원, 복학예정자 상담관리, 군휴학생 지원 및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복학지원센터의 조직은 별도로 정한다.(신설2018.01.01.)

②복학지원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사로 보하며 총장이 임명한다.(신설2018.01.01.)

제20조의4(온라인수업인증및질관리센터) ①본교에 온라인 수업에 관한 자체평가인증 및 지속적인 교육의 질 관리 업무를 수행할 온라인수업인증및질관리센터를 둔다.(신설2020.02.17.)

②온라인수업인증및질관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의5(교육실습지원센터) ①본교에 학교 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에 관한 운영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할 교육실습지원센터를 둔다.(신설2021.02.16.)

②교육실습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의6(인권센터) ①본교에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둔다.(신설 2021.11.05.)

- ②인권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1조(기타 한시조직) 총장은 특별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하부조직 외에 한시 과업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22조(위원회) ①총장은 중요 학사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별 기능·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23조(도서관) ①본교에 도서관을 두며, 도서관의 조직은 별도로 정한다.(개정2018.05.01.)
②도서관장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사로 보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3.1.)(개정2018.05.01.)
- 제24조(부속·부설기관) ①본교에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부속·부설기관과 부설 연구기관을 둔다.
②본교에 두는 부속·부설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의 종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보직 및 임기

- 제25조(보직) ①(삭제2020.01.01.)
②총무처장은 참사 이상으로 보하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대학원장, 학장, 처장(총무처장을 제외한다), 단장 및 부속기관의 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사로 보하며,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8.22.)
④우송교양대학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또는 전문 지식을 갖춘 외부 인사로 보하며,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12.01.)(개정2020.03.31.)
⑤국제교류원(처)장, 대외협력원(처)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또는 전문 지식을 갖춘 외부 인사로 보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2014.1.1.)(개정 2019.8.22.)(개정 2019.12.01.)
⑥센터장 및 부속기관장은 전임교원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인사와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8.22.)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속하지 않는 다른 보직자는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12.01.)
- 제26조(보직자의 연임) 제25조에 규정한 보직자는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이 규정은 2016년 1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3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제4조제3항은 201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하되, 제20조의6 개정 사항은 2022년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